

법률 제13317호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4호 중 “특허출원료, 심사청구료”를 “특허출원료”로 한다.

제84조제1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이후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가 있기 전 까지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한 경우 이미 낸 심사청구료

가. 제36조제6항에 따른 협의 결과 신고 명령(동일인에 의한 특허 출원에 한정한다)

나. 제58조제1항에 따라 의뢰된 선행기술의 조사업무에 대한 결과 통지

다. 제63조에 따른 거절이유통지

라.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심사청구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특허출원을 취하(제53조제4항 또는 제56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포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